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01
----------	-------

발의연월일 : 2025. 12. 10.

발 의 자 : 위성곤·김 윤·권향엽
강준현·진성준·염태영
이용우·송재봉·이재관
임미애·박지혜 의원
(11인)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최종에너지의 절반 가량이 난방 및 냉방 등 열에너지 형태로 소비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38%를 열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 전략 마련이 필수적임.

국내 역시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열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48% 수준에 달하며 에너지 부문 배출량의 29.2%를 열에너지가 배출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 수급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만 편중되어 왔으며, 정작 비중이 큰 열에너지 분야는 구체적인 정책목표 설정조차 미비하여 탈탄소화 전환 속도가 현저히 느린 실정임.

이에 열에너지 부문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하여

열공급사업자 등에게 탄소중립 전환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열(재생열, 미활용 폐열 등) 공급 및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함.

아울러, 열네트워크의 개방과 연결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청정열 공급인증서(REC) 거래 등 시장 기반의 이행 체계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열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정 규모 이상의 열공급사업자 및 열관련 연료공급자 등은 3년마다 탄소중립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자발적으로 목표를 조기 달성하려는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열공급사업자는 다른 열생산자가 열네트워크 접속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열네트워크를 개방하고, 정부는 청정열네트워크의 신설·교체 및 탈탄소화 전환 사업에 투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8조).

다. 일정 규모 이상의 열공급사업자 등에게 연간 열공급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열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11조).

라. 공공기관, 대규모 주택단지, 데이터센터 등을 신축·개축하는 경

우 예상 열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열 설비를 통해 충당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2조).

마. 청정열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열구매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청정열 생산 실적을 증명하는 ‘청정열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 이를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기반의 이행 체계를 구축함(안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

바.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사업비를 조성하여 R&D, 시범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열에너지센터’를 지정·운영하며, 청정열 설비에 대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의무를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주요내용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열에너지기본법안」(의안번호 제150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열에너지의 탈탄소화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청정열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열에너지”란 연료의 연소 또는 전력 등을 사용하여 발생시키거나 자연계 및 산업 공정 등에서 존재하는 열을 포집하여 증기·온수·냉열 등의 형태로 생산·변환·저장·수송·공급 또는 이용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2. “열에너지 부문”이란 열에너지를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에너지 소비 부문을 말한다.

가. 건물열 부문: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서 난방·냉방·급탕 등을 위하여 열에너지를 소비하는 부문

나. 산업열 부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현장에서 공정, 건

조, 가열 등을 위하여 열에너지를 소비하는 부문

다. 그밖에 열에너지의 소비가 필요한 부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문

3. “재생열”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성한 열에너지를 말한다.

4. “미활용 폐열”이란 산업 공정, 발전, 폐기물 소각, 하수처리, 데이터센터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여 대기나 수중에 버려지는 열로서, 적절한 방법으로 회수하면 에너지로 이용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5. “청정열”이란 다음 각 목의 에너지를 말한다.

가. 재생열

나. 미활용 폐열

다. 제9호,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른 열전기융합설비, 열전기동시 생산설비 또는 복합열설비가 생산한 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배출계수 기준에 적합한 열

라.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열저장설비 또는 복합열설비에 저장하였다가 방출하여 공급하는 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배출계수 기준에 적합한 열

6. “열네트워크”란 열에너지를 수요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배관·열교환·저장·계량 등의 설비체계를 말한다.

7. “열공급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열을 둘 이상의 수요자에게 공급하거나 열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열생산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자가소비용을 포함한다)

8. “열관련 연료공급자”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등 난방·급탕·공정열 등의 열에너지 생산 또는 이용에 사용되는 연료(부산물로 발생하는 연료 및 폐자원을 활용한 연료를 포함한다)를 제조·수입·판매(도매 및 소매를 포함한다)하거나 저장·수송(배관을 통한 공급을 포함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열전기융합설비”란 전력 투입으로 열을 생산하거나 변환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성능 및 효율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말한다.

10. “열전기동시생산설비”란 연료를 투입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11. “열저장설비”란 열을 저장하였다가 방출하여 열계통 또는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12. “복합열설비”란 제9호 및 제11호의 설비를 통합하여 운전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열에너지의 탈탄소화 전환 및 청정열의 이용·보급과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

제2장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청정열 기반 구축

제4조(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계획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탄소중립 전환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열공급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열관련 연료공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열전기동시생산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비 현황과 최근 3년간 에너지수지 및 온실가스 배출
2. 청정열로의 전환 시나리오와 단계별 일정
3. 계통·열공급 안정성 영향 및 소비자 요금영향 완화대책
4. 근로자·협력업체 전환지원 등 공정전환 계획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전환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보완을 요청하거나, 전환계획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안보·공공안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환계획 수립 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전환계획 작성 및 제출 시점, 점검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자발적 전환에 대한 지원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자가 전환계획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와 온실가스 감축 및 청정열 전환에 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자에게 청정열 설비투자 및 연료 전환 비용의 보조·융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열네트워크 상호접속 등) ① 열공급사업자는 다른 열공급사업자나 열생산자가 열네트워크의 상호접속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접속으로 인하여 열네트워크의 안전이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네트워크를 접속하여 이용하려는 자는 열공급사업자에게 적정한 접속 비용 및 망 이용요금 등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호접속의 범위, 조건, 절차, 요금 산정 기준 및 분쟁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열생산설비의 전환 권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열에너지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화석연료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노후 열생산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청정열 설비로의 전환을 권고하거나 전환 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설비 교체 비용의 지원, 세제 혜택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청정열네트워크 투자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열에너지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열수요지구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정열 공급 기준을 충족하는 열네트워크(이하 “청정열네트워크”라 한다)의 신설·확장·노후교체 또는 탈탄소화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투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

로 한다.

1. 청정열을 활용하는 설비 및 배관망의 구축·개선
2. 화석열원에서 청정열원으로 전환을 위한 설비 개조·대체 및 고도화
3. 열네트워크의 상호접속·계량·디지털화 및 손실저감 설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열에너지의 탈탄소화 전환 촉진을 위한 사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전환계획이 확정된 경우
2. 취약계층·공공임대주택 등 요금영향 완화가 필요한 지역 또는 도서·산간 등 에너지 비용이 높은 지역에 대한 사업
3. 대규모 열저장, 광역 열네트워크 연계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사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대상, 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정열 설비의 보급 및 열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청정열 공급 및 이용 의무화

- 제10조(열구매 계약) ① 정부는 청정열의 안정적 활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열구매 계약 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열공급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청정열공급자와 장기 열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구매 계약 제도의 표준계약서, 가격결정·정산, 체결 방식, 분쟁조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청정열 공급의무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열에너지 부문

의 탄소중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열공급사업자 및 열관련 연료공급자(이하 “청정열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연간 열공급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열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청정열공급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자체 설비를 통한 회수·생산 청정열의 직접 공급
2. 청정수소, 바이오가스 등 청정연료의 혼입 또는 대체 공급
3. 제10조에 따른 열구매 계약을 통한 청정열 공급
4. 제13조에 따른 청정열 공급인증서의 구매 및 제출

③ 제1항에 따른 의무 공급 비율, 의무량 산정 기준 및 이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청정열 사용의무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열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열로 사용하도록 청정열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또는 제4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7.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
 8.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9.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또는 일정량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용자
-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자체 청정열 생산 설비의 설치·운영
 2. 제10조에 따른 열구매 계약을 통한 청정열 공급
 3. 제13조에 따른 청정열 공급인증서의 구매 및 제출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열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청정열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청정열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및 건축

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청정열 산정·인증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적·지리적 여건상 청정열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를 감면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⑥ 청정열 사용의무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청정열 공급인증서 등) ① 청정열을 생산하여 열네트워드에 공급하거나 자가 소비하는 자는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청정열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청정열원의 종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발급 시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③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이하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④ 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 및 거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거래시장 개설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공급인증기관(이하 “공급인증기

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급인증기관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의무 이행의 유예 및 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 청정열원의 부재, 지리적 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부족한 열량에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 거래 가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수를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제17조에 따른 열에너지 탈탄소화 지원 사업비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제4장 산업 육성 및 지원

제17조(사업비의 조성 및 사용) ① 정부는 열에너지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열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 작성
2. 청정열의 연구·개발, 기술평가 및 시범·보급사업
3. 청정열의 공급 및 사용 의무 이행 지원
4. 청정열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5. 청정열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6. 그 밖에 청정열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8조(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열에너지의 탈탄소화 전환과 청정열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3. 실용화된 청정열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된 청정열 설비가 설비 인증을 받거나 국제표준화 또는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청정열 기술의 사업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2. 청정열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양도

3. 개발된 청정열 기술의 교육 및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청정열에의 투자권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청정열의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① 청정열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청정열 설비의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 설비 및 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청정열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청정열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설치된 청정열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정열 설비의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행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결과를 제23조에 따른 열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열에너지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3조(열에너지센터) ① 열에너지 전환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열에너지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정열 의무화 제도의 운영 지원 및 관리
2. 공급인증기관의 업무 지원
3. 청정열네트워크 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지원
4. 청정열 설비의 인증 및 표준화 지원
5. 통계 작성, 국제협력 및 홍보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 공급인증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급인증서 발급·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공급인증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벌칙)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거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지원받은 금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③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래시장 외에서 공급인증서를 거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환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열네트워크 상호접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비행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4조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제23조에 따른 열에너지센터의 설립 등

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